

검찰·공수처 '대상 나누기' 합의... '질서 있는 수사' 이뤄질까

중복수사 논란에...검찰, '이첩 재검토' 입장서 선회해 합의 尹 중복 소환에 변호인 반발 변수도... '위법수사' 논란 차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계가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랐고 수사기관들도 떠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각 기관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경쟁은 각 기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중복으로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황은하 원내대표 등 탄핵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각 이뤄지면서 수사에 혼선이 벌어지고 오히려 실제 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 11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서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며

이들 기관 간에는 일정 부분 정리가 이뤄졌지만, 공조본과 검찰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앞서 경찰이 소환조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

자 경찰 안팎에선 '견제용'이란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13일을 기한으로 한 공수처의 첫 번째 이첩 요청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절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양측이 견해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소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자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수사'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 선출

23·24일 청문회...27일 임명동의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

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

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진수 기자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및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 등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검찰·공수처 "절차따라尹소환추후 협의"

검찰 출석 무산 전망...공수처 협의 통해 재정보·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부과청청사에 출석하라는 조서발령이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

능성이 커 보인다.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진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내부 검토와 공조수사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 국방부 조서본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첩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들 "권한대행에 임명권...尹탄핵심판 공개변론 타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헌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도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권한대행 임명권 "헌법취지 부합"...'불행사위헌소지' 의견도 부정선거론에 與추천 조한창도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도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6인 체제에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마·조 후보자 모두 '심리 가능' 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 이후 선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마 후보자는 "가처분 결정은 심리정착에 관한 것"이라면서 "최근 현재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을 통해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하

는 경우 중구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현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춰 현재가 완전적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마 후보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0조를 들어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의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 34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같은 법 조항들을 인용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추천의 조 후보자 역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호처에 또 막힌 대통령실 압수수색

'계엄통화' 비화본 서버 확보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후 4시부터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응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이 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과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에 불응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본'(보안휴대전화) 통신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비화본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한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역시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만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제한된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원이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연합뉴스